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96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최소 생활 실 면적 및 창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소 생활 실 면적을 규정함(안 제3조의2제1호).

- 1)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
- 2)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

나.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의2제2호).

- 1) 전용공간은 외기에 면하도록 창문을 설치
- 2)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1. 21.~2. 10.)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포함)을 신청(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3조의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u>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 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 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 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u></p> <p>2. <u>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 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 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 기로 설치할 것</u></p>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없음.

4. 작성자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강익수(02-2133-7101)